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지불”을 “지급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,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
일괄개정령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개 문화체육관광
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
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감면대상국유재산란 중 “지불방법”을 “지급방법”으로
한다.

제2조(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5호서식 중 “입회인”을 “참관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“입회인”을 “참관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